

세무회계저널
제18권 제1호 2017년 2월 pp.237~252
한국세무학회

사회적기업 회계 관련 이슈*

김이배** · 윤종태***

<요 약>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사회적기업들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은 통일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각 사회적기업들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다르며, 법률에 회계기준의 준거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사회적기업들이 적용해야 할 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의 회계 관련 내용, 용어가 서로 차이가 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들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 두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인증 요건인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에 관한 판단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의 내용과 용어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기업 운영과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회계와 관련한 내용의 혼란을 피하고 용어상의 혼동을 제거하고 통일시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회계처리 적용에 도움을 주고, 향후 이와 관련한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실제 회계정보나 재무자료를 기초로 한 실증분석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기업 현장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못한 한계점은 존재한다.

<주제어>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회계, 사회적기업 회계 이슈

* 본 논문은 덕성여자대학교 2015년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덕성여자대학교 부교수, kyibae@duksung.ac.kr, 주저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팀장, jtyoon@ikosea.or.kr, 공동저자

I. 서 론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¹⁾을 조직의 목적으로 삼고 활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을 하는 조직들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회적기업이 등장하여 성장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왔는데, 2016년 8월말 현재 약 1600여개의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져²⁾ 우리사회에 부족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 포함 약 35,000명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³⁾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로 사회적기업 요건을 정하고 이를 위한 인증을 거쳐야 사회적기업이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주요 요건은 7개인데,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 고용 통한 영업활동, ③ 사회적목적 실현, ④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 통한 수입, ⑥ 정관과 규정, ⑦ 이윤배분 제한 등이 그것이다.⁴⁾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두 번째와 다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요건 등을 회계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개선점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아 회계용어의 선택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사회적기업들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 두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통해 기업의 언어인 회계의 투명성과 소통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인증 요건인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기업 운영과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일회성 기부나 자원봉사 등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비즈니스를 통해 실현된 수익으로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임

2) 2016년 8월말 현재 1606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임(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4)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II. 사회적기업 회계 관련 이슈

1.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 관련

가. 현행규정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건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서는 사회적기업들의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자 관련 조항들을 두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요건 중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①-5 인증 요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⁵⁾,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서는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함. 즉, 총 노무비를 총 영업수입으로 나눠 50% 이상”인지를 측정하여 인증 및 인증 계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조항들의 목적은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많은 인증신청 기업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는 별개로 인위적으로 6개월의 영업실적만을 조정해서 제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인증지침의 다른 조항(사회서비스 제공실적 및 일자리 제공실적의 산정 등)에도 원용되어 6개월 실적을 인위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이 직전 6개월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이 조항에서 직전 6개월이란 문구에 매몰되어 재무제표를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6개월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너무 인위적이라 할 수 있고 조작 가능성도 존재한다(실제 문제 있어도 6개월만 별도로 관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 셋째, 산업의 특성상 계절적 업황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 6개월로는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활동은 계속적인 것이므로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해서는 회계기간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이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5)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10조

이 조항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최소한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인위적인 재무제표의 기간 조정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경영실적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 관련

현행 규정		개선방안	기대효과
목적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	시행령 제10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변경	인위적인 재무제표의 기간 조정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경영실적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
육성법	육성법 제8조 ①-5 인증 요건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대통령령	시행령 제10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인증지침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함. 즉, 총 노무비를 총 영업수입으로 나눠 50% 이상인지를 판단		

2. 용어의 정리 : 수입과 수익

가. 현행 규정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경영성과를 검토할 때,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시행령 및 규칙 그리고 인증지침에서는 주로 ‘수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라고 수입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①항-5(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해당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사회적기업육성법시

행령 제9조 ①-3-나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등 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나. 문제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등을 포함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회계기준, 기업의 회계처리에서는 수입과 수익은 별개의 용어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당연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서는 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수입과 수익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수익과 비용은 회계상 발생주의 개념하의 용어이고, 수입과 지출은 현금주의 개념하의 용어이다. 즉, 수입과 지출은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 현금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등에서는 주로 수입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초기에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들의 인증이 많았기에 이를 감안하여 쓰인 용어로 추정된다.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들의 회계처리는 주로 현금주의·단식부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입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현재 발생주의·복식부기를 하는 주식회사가 절반이 넘으므로(‘16년 주식회사 비중은 58.3%),⁶⁾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다른 회계용어들과 일관성이 있게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기업의 표준 회계용어인 수익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 등에서 기업회계의 표준용어인 ‘수익’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대신 ‘영업수익’으로 대체)하다. 이를 통하여 기업회계의 일반적인 용어로 표준화함으로써 회계용어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가능성을 향상시켜 자원연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 관련하여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지침상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방식은 매출액에서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뺀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유통업의 경우 상품매입액을, 제조업은 원재료비를 제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과대계상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원재료비는 제품과 재공품에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시, 유통업과 제조업의 경우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이익으로 대체한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일적인 회계기준으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3.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 산정 관련

가. 현행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인증 업무지침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한 적립금을 인정하나, 적립 기간 2년 내 이를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나.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1까지 배당 가능하나 실제 배당을 할 정도로 이익을 달성하는 사회적기업은 극소수이며, 이익잉여금이 발생하는 일부 사회적기업들은 법정준비금 적립 및 향후 고용증대, 시설투자, 경영환경 변화 등에 대비하여 유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이윤의 배당을 제한하고 사회적목적을 위해 2/3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영국의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 공동체이익회사)의 ‘자산동결’ 또는 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익배분의 금지와 자산동결’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의 기본정신인 ‘이익의 사회적목적 사용’이란 공익성 확대와 지나친 사적 이윤 추구 제한이 목적이다. 또한 이는 공공구매 지원 및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혜택의 근거가 된다. 이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배분가능한 이윤 등 용어의 문제이다. 이윤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명확하지 않으며, 배당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회계상 이익과 실제 현금흐름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등의 용어가 표준 회계용어가 아니어서 의사소통에 혼란이 초래되며,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이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 배당금 중 무엇을 지칭하는지 공식적인 회계용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법상 이윤과 재무제표상 이윤의 측정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인증 당시 존재하는 이익잉여금을 포함시킬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다.

셋째, 실제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한 것인지 측정이 불가능하다. 특히 전년도 잉여금을 금년에 사용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고려한다면 측정이 불가능하다.

넷째, 자본계정인 ‘이익잉여금’을 ‘비용’인 관관비로 지출하는 문제(사회적목적준비금이라 해도 종업원 복지, 설비, 투자 등으로 사용)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이윤의 최대 3분의 1 배당가능하나, 현실적으로 3분의 1 배당은 희귀한 실정이다.

여섯째,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의 산정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없이 현재 상법상의

이익잉여금으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으나(상법 제 462조, 인증지침 2016, 76페이지),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⁷⁾

일곱째,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이라 함은 연말기준 이익잉여금으로 파악가능하나, 이럴 경우 기술적으로 3분의 1씩 배당해 나갈 수 있다(극단적인 경우, 연말 기준으로 계속 3분의 1씩 배당가능). 현 상법상의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산출 방식에 의하면 연말 기준 이익잉여금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기술적으로 3분의 1씩 지속적으로 배당해 나갈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⁸⁾

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표준적이고 공식적인 회계 전문용어로 통일하여⁹⁾ 의사소통의 표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윤은 이익으로 변경하고,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은 ‘연도별 당기순이익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배당가능에서 배당제한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이 조항은 영국의 CIC나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산동결’ 조항을 원용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잉여(이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회적목적으로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배당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으로부터의 이윤 누출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며, 또한 나머지 부분은 기업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셋째, 배당가능한 이윤의 산정에 대한 방안으로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1안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준으로 배분가능한 이윤을 산정한다. 현재 인증지침에 의하면 상법 462조에 의거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 이 방법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누적적으로 보게 되므로,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에서의 ‘회계연도별로’, 즉 기간별로 볼 수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제2안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기준으로¹⁰⁾ 배분가능한 이윤을 산정한다. 이 방법은 배분가능한 이윤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연도의 배분가능한 이윤을 계산해서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시점 이전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제1안과 제2안은 동일한

7)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회계실무, 2016, 124페이지

8) 예를 들어 n년부터 3억원씩 순이익을 기록하는 사회적기업 G가 있다면, 이 기업의 이익잉여금은 $n=3$, $n+1=6$, $n+2=9$, $n+3=12$ 억원이 될 것임. 다만, 이 기업이 $n+3$ 이 되는 년초에 적법하게 3분의 1인 3억원을 배당한다면, 실질적으로 $n+2=6$ 억원이고, $n+3=9$ 억원 되고 다음 연초에 다시 3억원 배당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론적으로는 매해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을 전액 배당할 수 있는 체제로 무한운영될 수 있는 모순이 발생

9) 용어는 “기업회계기준”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회계실무, 2016”을 참조

10)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회계실무, 2016, 124페이지 참조

것으로(만약 기업의 발생부터 소멸시기까지 적용시킨다면 양자는 동일), 중요한 차이는 인증 당시 존재한 이익잉여금을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에 포함시킬지 아닐지에 대한 것이다. 결국 인증 이전 보유 중이던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사회적기업들의 이윤 배분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통해 공통된 기준으로 적용가능하며, 자산의 외부유출을 막아 재정건전성을 높여 사회적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4. 배분가능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에서, 적립금의 2년 내 사용 관련

가. 현행규정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상법상 회사 등은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받게 되며, 이를 근거로 인증지침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외에 사회적 목적을 위한 적립금 등도 사회적 목적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다(인증지침 88페이지). 특히 이윤의 사회적목적에 위한 사용 규정의 예시로, 매해 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을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의 경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적립금을 인정하나, 적립 기간 2년 내 이를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 조치 후 이행계획에 따른 시정도 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 부과 또는 인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사회적기업들은 보통 당기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겨 법정준비금을 적립하거나 향후 고용증대 및 시설투자 또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한 유보금 용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조항은 사회적 목적에 관해 지나치게 협의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2년 이내에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들이 투자, 고용 및 경기 변화에 대한 대비 등 여러 가지 경영환경 변화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소 과도한 규제로 보여진다.

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이 조항과 관련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목적을 위한 적립금의 경우 그 용도를 지금 보다 폭 넓게 인정해주고(예 : 인수합병, 분할, 기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적립금의 경우 해마다 적립금 현황 및 이행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자본변동표 관리 필수).

둘째, 현재 2년 이내 적립금의 목적내 사용 규정을 완화하여 일정비율까지는(예 : 50%) 최대 5년간 적립을 허용하되, 적립목적에 위배하여 배당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인증 취소 등 강경조치가 필요하다. 아니면 2년내 조항을 없애 사회적기업의 자율성과 재투자 여력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들이 2년의 기간에 업매이지 않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경영전략(인수합병, 분할, 신사업 등)을 수립하여 투자 및 고용계획 등을 실현하여 미래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5. 인증시점 당시의 잉여금의 배당 관련

가. 검토 배경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이전에 보유 중이던 이익잉여금의 배당을 위해 정관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사회적기업들도 인증 이전의 이익잉여금 배당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 이전의 이익잉여금의 배당과 관련된 정책적 기준을 설정하고 대처방안 및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배당 가능 여부 검토

인증 이전에 발생한 이윤의 배당에 관련해서는 배당이 불가하다는 입장과 배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첫째, 배당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증심사는 당시 신청기업이 보유했던 이익잉여금 등이 포함된 과거 실적에 기초하여 요건을 판단하고 인증했으며, 해당 기업들의 과거실적에는 지자체의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 인건비 등 정부지원을 받아 쌓은 잉여금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증당시 정관변경(이사회, 주총)을 통해 배당가능한 이윤의 2/3를 사회적목적에 위해 사용할 것을 공증하고 등기한 바, 인증기업의 주주라면 당연히 인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소급하여 배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즉, 이윤의 2/3를 사회적목적에 위해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기업 정신에 부합하며, 인증 과정에서 이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어 있다고 보아 배당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당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 당시의 약속을 위배하는 것이며, 또한 배당을 위한 관련사항 검토 및 정관변경, 이사회, 배당 후 정관변경 및 고용노동부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비용

의 소요가 예상된다.

둘째, 배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시점 이전의 이윤인 이익잉여금은 사회적기업이 받는 각종 정부지원 및 민간 지원 등과 무관한 것이므로 이윤의 2/3 사회적목적 사용에 해당되지 않아 배당이 가능하다. 즉, 사회적기업으로서 누리는 각종 지원을 통해 생성된 이윤에 대해서만 배당을 규제하고,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의적인 처리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배당가능한 이윤의 2/3의 사회적목적 사용은 과잉규제이며, 관련 사항에 대한 공지 및 주주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주주들은 인증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인증 이전의 이윤은 배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법률 검토 결과, 현재의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인증지침을 고려할 때 인증시점 당시의 정관(이윤의 2/3 사회적목적 사용)과 위배되므로 인증 이후 정관과 다르게 소급하여 배당하는 것은 위법으로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배당은 불가하다.

따라서 향후 인증 신청시 모든 이윤의 2/3의 사회적목적 사용을 명시하는 주주동의서를 제출 받도록 하여 관련된 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기업들은 배당 실시 후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기본인 자산동결을 준수함과 동시에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이윤(이익)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영리기업의 기부금 인정 확대 관련

가. 현행규정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중 제1호의 금액¹¹⁾에서 제2호의 금액¹²⁾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¹³⁾

1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

1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13) 법인세법 제24조

이 조항은 배당 등 주주에게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을 고려하고 비정상적인 기부행위를 방지하고자 영리기업의 기부금을 당기순익의 10%를 최대 한도로 간주하고 있다.

나. 문제점

이 조항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사회적목적을 위해 기부를 활발히 하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당기순익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으나 손비인정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당기 순이익이 과소할 경우 등도 포함).

둘째, 일부 사회적기업의 경우 정관에서 이익배당을 금지하고 전액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기순익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손비인정을 못받고 있다(예 : 행복나래).

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기업의 공익적 목적이라면 손비인정이 없더라도 기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기업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손비인정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목적의 기부금의 손비인정 확대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을 달성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 등을 포함한 사회적 금융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금 관련

가. 현행규정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는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 기부세액 공제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과세소득 범위 내에서 50% 공제하고 지정기부금의 경우 과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법인세법 24조).

나.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사회적기업은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조직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이 다른 사회적기업을 기부금 또는 현물기부(설비 등)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규정은 이윤의 2/3를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다른 사회적기업을 돕는 것이 주목적인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2/3을 다른 사회적기업을 위해 지원할 경우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사회적기업이 영리 사회적기업을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접대비’로 간주되며(손비인정 불가), 비영리이고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당해 소득의 10%까지는 세금공제 혜택이 있으나 그 이상에 대해선 세금공제 혜택이 없다. 만약 당해 소득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중 20% 정도가 법인세로 납부될 것이나(평균적인 법인세율로 추정), 만약 세제혜택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용도로 쓸 수 있어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정부 등 공공부문이 커버 못하는 영역에 대한 사회적기업들의 공익 목적 활동에 대한 손금인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이 다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 혜택을 탄력적으로 운영(현 10%인 공제비율을 30%로 확대 검토)하여야 한다. 즉, 다른 사회적기업 지원이 주된 사업목적의 하나인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목적 준비금’을 인정하여 그 적립 및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기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참조). 이를 통하여 수익 사업에서 발생하는 과세 대상 소득을 법인세 부담 없이 비영리 사업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사회적목적 적립금 인정으로 사회적기업의 투자 지원, 판매촉진, 시설지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타 사회적기업 지원임이 정관에 규정되어야 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정관에 규정하되 주주 전체의 동의서를 구비할 것, 이윤 전체를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정관에 규정하고 그 절차를 규정으로 완비해야 하며, 청산 시 잔여재산 배분도 전액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기부할 것과, 위 조항들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을 것임과 관련된 사항 일체를 공시함과 동시에 공적 기관의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받을 것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금’에 대한 세금 혜택의 확대는 사회적기업의 투자 지원, 판매촉진, 시설지원을 진작시켜 사회적기업들의 자생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공익목적 사회적기업들의 출현과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의 활동과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해줄 것이다.

Ⅲ.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조건과 사회적기업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처리 기준 중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요건 등을 회계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개선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비영리조직에서 출발한 경우도 많고, 영리적 기업의 성격과 비영리적 조직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전면적인 적용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태생적인 본질을 반영하여서 인지 사회적기업들이 적용해야 하는 회계기준은 통일되어 있지 않고 각 사회적기업들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다르며, 법률에 회계기준의 준거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적용해야 할 회계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영리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아직 사회적기업 중 상장기업은 없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없고, 비상장기업이 적용하고 있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사회적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다.

그렇지만 사회적기업들이 적용해야 할 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존재 근거가 되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의 회계 관련 내용, 용어가 서로 차이가 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회계기준의 적용과 회계용어의 선택에 차이가 존재하여 회계처리 및 적용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사회적기업들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 두 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통해 기업의 언어인 회계의 투명성과 소통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주요한 인증 요건인 지속가능성과 공익성에 관한 판단을 위한 회계처리 기준의 내용과 용어를 명확히 하여 사회적기업 운영과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10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노무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인위적인 재무제표의 기간 조정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경영실적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수입이라는 용어 대신에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시행령 등에서 기업회계의 표준용어인 ‘수익’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하여 기업회계의 일반적인 용어로 표준화함으로써 회계용어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간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가능성을 향상시켜 자원연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시, 유통업과 제조업의 경우 매출총이익 또는 영업 이익으로 대체한다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일적인 회계기준으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셋째,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 산정 관련하여 표준적이고 공식적인 회계 전문용어로 통일하여 의사소통의 표준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윤은 이익으로 변경하고,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은 ‘연도별 당기순이익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또한 배당가능에서 배당제한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넷째, 사회적목적을 위한 적립금의 경우 그 용도를 지금 보다 폭 넓게 인정해주고, 사회적 목적을 위한 적립금의 경우 해마다 적립금 현황 및 이행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2년 이내 적립금의 목적내 사용 규정을 완화하여 일정비율까지는 최대 5년간 적립을 허용하되, 적립목적에 위배하여 배당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인증 취소 등 강경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인증시점 당시의 잉여금의 배당과 관련하여 현재의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인증지침을 고려할 때 인증시점 당시의 정관(이윤의 2/3 사회적목적 사용)과 위배되므로 인증 이후 정관과 다르게 소급하여 배당하는 것은 위법으로 인증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배당은 불가하다. 여섯째, 기부금 인정 확대와 관련하여 기업의 공익적 목적이라면 손비인정이 없더라도 기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나, 기업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손비인정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목적의 기부금의 손비인정 확대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을 달성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다. 일곱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금과 관련하여 정부 등 공공부문이 커버 못하는 영역에 대한 사회적기업들의 공익 목적 활동에 대한 손금인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회계와 관련한 내용의 혼란을 피하고 용어상의 혼동을 제거하고 통일시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회계처리 적용에 도움을 주고, 향후 이와 관련한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실제 회계정보나 재무자료를 기초로 한 실증분석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기업 현장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지 못한 한계점은 존재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1. 사회적기업 회계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사전실태조사연구.
고용노동부. 201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고용노동부. 2016.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회계실무.
김이배. 2014. “사회적기업 회계 개선방안”. 경영교육연구. 29(1) : 469-490.
한국공인회계사회. 2011.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초컨설팅 종합보고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사회적기업 회계가이드라인 연구 작성 용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사회적기업 매뉴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사회적기업 회계가이드라인.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The Accounting Issues on Social Enterprise*

Kim Yibae** · Yoon Jongt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quirements of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and the requirements related to social enterprise's sustainability and public interest among the accounting standards to be applied by social enterprises.

Under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law, which is the basis for the existence of social enterprises, the accounting standards to be applied by social enterprises are not uniformly defined, and they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gal basis of each social enterprise.

The accounting standards that social enterprises should apply are not the full adoption of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SME accounting standards. Therefor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law and accounting—related contents and terms i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which may cause confusion among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nterprise stakeholders. In additi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confusion will arise in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because accounting for social enterprises often involves a mixture of cash and accrual accounting.

In this study, we tri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communication of accounting, which is the corporate language, through solving these problems. At the same time, the contents and terminology of accounting standards for judging sustainability and public interest, which are the main certification requirements of social enterprises, were clarified and they were intended to help to operate and cultivate social enterprises.

The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aims to avoid the confusion of contents related to the accounting of social enterprises and to eliminate the confusion of terms and unify them.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help the application of accounting by social enterprises and social enterprise stakeholders and will help to revis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not conducting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ctual accounting information or financial data of social enterprises and not based on in—depth survey of facts reflecting all opinions of social enterprises.

〈Key words〉 Law of Promotin of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Social Enterprise Accounting Issu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2015 Duks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Fund.

** Department of Accounting, Duksung Women's University, kyibae@duksung.ac.kr, First Author

*** Certification Assistance Team,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jtyoon@ikosea.or.kr, Co—author